

복지이슈 FOCUS

현상공감 경기복지재단

제05호
2022-05

2022. 0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복지정책 주요내용 및 경기도 과제

성은미 연구위원 (sseemm@ggwf.or.kr)
민효상 연구위원 (hsmin77@ggwf.or.kr)
이병화 연구위원 (bhlee@ggwf.or.kr)
황경란 선임연구위원 (hkran@ggwf.or.kr)
주사랑 연구원 (srjoo@ggwf.or.kr)

목차

- I. 들어가며
- II. 복지분야 국정과제 및 경기도 과제
- III. 나가며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연구진

연구책임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주사랑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 복지이슈 FOCUS는 빠른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현안 및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복지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55 Fax : 031-898-5935 E-mail : hsmin77@ggwf.or.kr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 중 복지관련 과제를 살펴보고 경기도 차원에서 점검해야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함

■ 경기도 검토사항

- 첫째, 국정과제에 사회보장 조정기능 강화, 시군 재정 부담이 큰 사업들(보육 등)이 제시되어 있음. 해당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시군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함
- 둘째, 국정과제에 제시된 사업 중 일부는 경기도 자체사업과 유사하여 국정과제 실행과정에서 경기도사업과 중앙사업과의 관계설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에 긴급지원사업 확대, 청년과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사회서비스원 기능, 청년자산형성과 관련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음. 해당 국정과제의 경우 경기도에서 이미 유사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 이에 국정과제 실행과정에 경기도는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 사업조정 필요성, 중앙정부와 경기도 자체사업 간의 관계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셋째, 국정과제에 포함된 복지서비스 공급기관 다변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도는 서비스 공급기관 관리,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국정과제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다변화, 사회서비스 혁신 TF, 종사자 처우개선 등 복지서비스 공급구조 변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음
 - 국정과제 실행과정에서 경기도는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 관리,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또한 서비스 공급구조 변화와 관련해 경기도내 서비스 공급자와 정책논의, 협의 등을 고려해야함
- 넷째,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확대, 중앙정부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및 급여 인상, 각종서비스 체계 변화는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연결되어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I 들어가며

-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구성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2022년 5월 3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함
 - 국정목표는 총 6가지이며, 복지정책은 이 중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에 주로 제시되어 있음
- 국정과제에 포함된 복지정책 중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검토할 안건도 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해야할 안건들 역시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대상자 확대는 경기도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조정기능 강화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고민해야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6월 1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국정과제에는 구체적인 정책설계나 예산추계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제시된 정책범위 내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할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함
 - 사회보장법 제3조 정의에 따라 복지정책을 분류하여 살펴봄
 - 사회보장법 제3조 정의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임
 - 특히, 이 중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는 국정과제에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함.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개선, 상병수당 도입은 중요한 사회보장의 변화지만 중앙정부 과제라 할 수 있음

II 복지분야 국정과제 및 경기도 과제

1)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 국정목표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복지분야와 관련된 국정비전은 “생산적 맞춤형복지”임
 - 생산적 맞춤형복지 : 일을 통한 복지가 최고의 복지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
 - 생산적 맞춤형복지에서 복지지출은 인적 투자로서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맞춤형 방식을 의미함

〈표 1〉 윤석열 정부 국정비전

국정운영원칙 : 국익, 실용, 공정, 상식	
↑	↑
국정목표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①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②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③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정목표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④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⑤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⑥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⑦ 디지털 전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⑧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정목표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⑨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⑩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⑪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⑫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⑬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국정목표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⑭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높겠습니다. ⑮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⑯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⑰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높겠습니다.
국정목표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⑱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⑲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⑳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정목표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출처 :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5.3.).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12p.

- 국정목표는 분야별로 총 6가지가 있고, 20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영역에 대부분의 사회보장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국정목표는 총 6가지로 ①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②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③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나라 ④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⑤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⑥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임
 - 사회보장 영역을 중심으로 보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중 9번째 약속으로 제시된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아래 중요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음
 - 그 외 국정목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아래 주거급여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은 국정목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 제시되어 있음

■ 국정과제

-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약속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아래 총 7개의 국정과제가 제시되어 있음
 - <국정과제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부터 <국정 48.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구현>까지 총 7개의 국정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음

〈표 2〉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국민께 드리는 약속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정 과제 (32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국정과제 42)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국정과제 43)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국정과제 44)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국정과제 45)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국정과제 46)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실현(국정과제 47)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구현(국정과제 48)

출처 :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5.3.).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15p.

- 이 외에 110대 국정 과제 중에서 <약속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에 포함된 국정과제 90. 91. 92에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제시되어 있음

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국정과제 42)

■ 주요내용

- 과제목표 :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 강화
- 주요내용
 - 상생의 연금개혁 :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 한 제도개편안 마련,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 기초연금 : 노인빈곤완화를 위해 단계적 인상(40만원)
 -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제도 전수 DB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내실화 및 사후평가강화, 객관적 분석에 기반 한 사회보장정책 수립 및 평가

■ 사회보장 조정기능 강화 관련 검토사항

- 중앙정부 사회보장 조정기능이 강화될 경우 도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부담증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보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첫째, 중앙정부 사회보장 조정기능이 강화될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 및 시군의 과도한 자료작성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 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신설변경 협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안건이 압도적으로 많고,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대안권고를 많이 받음
 - 아래 표는 2013년~2021.6월까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한 건수가 제시되어 있음. 경기도가 요청한 신설변경 협의 건은 959건으로 전국 신설변경 협의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안 중에서 부동의 비율은 전체 부동의 12.9%를 차지하고 있고, 대안권고를 받은 정책 역시 전체 대안권고 받은 사업 중 44.0%를 차지하고 있음

〈표 3〉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현황

구분	전체(2013~2021.1~6)					
	전체	협의완료	동의	부동의	대안권고	반려
중앙부처	295 (4.7%)	158 (4.7%)	119 (5.4%)	3 (2.3%)	0 (0.0%)	15 (2.8%)
서울특별시	408 (6.5%)	232 (6.9%)	146 (6.6%)	6 (4.5%)	3 (12.0%)	21 (4.0%)
경기도	959 (15.3%)	506 (15.0%)	333 (15.0%)	17 (12.9%)	11 (44.0%)	92 (17.4%)
합계	6,276 (100.0%)	3,367 (100.0%)	2,222 (100.0%)	132 (100.0%)	25 (100.0%)	529 (100.0%)

** 2017년까지는 신설변경협의 결과가 동의, 부동의 등으로 이뤄졌고, 2018년 이후부터는 협의완료, 반려로 이뤄짐
<https://www.ssc.go.kr/menu/after/after080206.do>.

- 이처럼 경기도 자체적인 신설변경제도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이 31개나 되어 신설변경협의를 대한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음
 -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장 조정기능의 강화는 과도한 자료작성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음
- 둘째, 중앙정부의 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할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함
- 중앙정부 정책 특히, 기존 사회보장정책과 중복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사회보장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의의가 있음
 - 다만, 협의의 수준, 권한의 범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즉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제한하여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음
 - 이에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회보장 조정기능 강화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의 수준, 권한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도 차원에서는 경기도와 중앙정부, 시군 간 사회보장 조정과정에서 광역의 역할을 고민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실제 중앙정부의 기능이 강화되면 광역인 경기도는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함. 즉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실질적인 사회보장 조정기능을 수행할지, 혹은 시군을 지원하는 지원자로서 역할할지 고민이 필요
 - 특히, 시군과 중앙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경기도 역할이 중요함. 한편으로는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가 조정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역할 정립 필요

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국정과제 43)

■ 주요내용

- 과제목표 :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 상병 및 실직 등 위기상황에 안심할 수 있는 소득안정망 구축
- 주요내용
 - 저소득층 생계안정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단계적 확대, 재산 및 자동차 등 재산기준 완화
 - 위기대응 지원 강화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생계급여수준으로 인상, 재산기준 완화.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이후 제도 도입
 - 민생안정 세제지원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적정수준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 퇴직소득세 부담
 - 주거급여 확대 : 주거급여를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추진(주거급여 확대는 국정과제 10 :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안에 제시되어 있음)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 시 검토사항

- 국정과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35%까지 높일 경우 경기도와 시군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국정과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와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와 같이 비수급빈곤층이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 확대는 의의가 있음
 -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는 경기도와 시군 재정 부담으로 연결됨
- 실제 2021년에 수행된 『경기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활용해 생계급여대상자 규모변화와 필요재정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117.6억원~228.8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함
 - 아래 표에는 총 4가지 형태로 산출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대상자 규모, 필요재정이 제시되어 있음
 - 경상소득기준으로 보건복지부 가구균등화지수를 활용
 - 급여적용비율을 2가지 형태로 적용
 - 가장 소극적으로 소요재정산을 추계하면, 42,042가구가 추가 대상자로 선정되고, 가구당 385,617명을 지원할 경우 전체 필요한 예산은 1,621.2억원, 경기도부담금은 117.6억원임

- 대상가구수, 급여액을 최대 규모로 예산을 추계하면 전체 3,155.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 중에서 경기도는 228.8억원을 부담해야 함

〈표 4〉 생계급여대상자 확대 시 대상자 규모, 필요예산 추계

구분	대상가구수 (가구)	가구당 지원금액 (원)	필요예산(억원)		
			전체 예산	경기도부담	시군부담
1모형	42,042	385,617원	1,621.2억원	117.6억원	57.9억원
2모형	42,042	427,000원	1,795.2억원	130.2억원	64.2억원
3모형	61,574	385,617원	2,849.3억원	206.6억원	101.8억원
4모형	61,574	427,000원	3,155.1억원	228.8억원	112.7억원

* 소득 : 경상소득 기준. 보건복지부 균등화 지수를 활용.

** 대상자 규모 : (기준중위소득 35%가구-기준중위소득 30%가구) * α.

***α(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적용비율) : 2가지 방법으로 적용비율 계산

① 『경기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원자료에서 적용비율 산출

② 관계부처합동(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상 적용비율

****급여 : 427,000원(관계부처합동(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상 제시된 급여액 기준)

385,000원(경기도 내부자료(2022). "2022년 경기도 생계급여 국도비 보조 가내시" 기준)

자료 : 경기복지재단(2021). 『경기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원자료 활용.

- 특히, 중요한 것은 <국정과제 5 :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의하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중앙정부 긴급지원사업 개선 관련 검토사항

- 중앙정부 긴급지원제도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형태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 긴급복지제도 변화에 대응한 사업내용 조정이 필요함
 - 경기도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지원사업 이외 자체적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중앙정부 긴급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면,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기준중위소득의 90%이하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함
 - 재산기준을 보면, 중앙정부 긴급지원사업은 최대 241백만원 이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는 도내 28개 시의 경우 310백만 이하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함
 -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중앙의 긴급지원사업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중앙정부의 긴급지원을 받고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가구를 지원하고 있음

〈표 5〉 중앙정부 긴급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구분		중앙정부 긴급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위기 사유	대상 (현행)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과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폭력을 당한 경우, 주거위기, 휴·폐업, 그 외 시장군수가 정한 위기가구		
선정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특례시	241백만원	310백만원
		중소도시(시)	152백만원	
		농 어 촌(군)	130백만원	
금융	600만원(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1,000만원		
지원 내용	생계 (4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5%	기준중위소득 25%	

출처 : 경기도내부자료(2022.1); 경기도(2022), 『2022년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업무안내』.

- 급여수준을 보면, 중앙정부의 긴급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의 15%를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기준중위소득의 25%를 지원하고 있음
- 첫째, 국정과제 43에 따라 중앙정부 긴급지원사업의 재산기준이 완화될 경우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역시 재산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중앙정부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위기가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맞춰 재산기준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국정과제 43에 따라 긴급지원사업의 생계지원수준이 기준중위소득 30%로 인상될 경우 경기도 역시 급여수준 인상과 관련 재정 확보가 필요함
 - 중앙정부정책에 맞춰 급여수준을 기준중위소득 30%로 높일 경우 추가 재정이 필요함. 다만,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이미 기준중위소득의 25%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임

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국정과제 44)

■ 주요내용

- 과제목표 :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 서비스를 혁신
- 주요내용
 - 수요·공급의 확대 : 청년, 맞벌이, 1인가구 대상의 신규사회서비스 개발,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를 전 국민으로 확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체계 강화
 - 혁신기반 구축 :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지원 강화
 - 처우개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 및 근로여건 개선

■ 경기도 1인가구 대상 서비스 확대시 검토사항

- 1인가구 대상의 신규사회서비스가 개발될 경우 기존에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들 간의 관계 검토가 필요함
- 현재 경기도는 “따로 또 같이, 더불어 사는 『나우리(나+우리)』 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음(경기도 내부자료, 2022)
 - 경기도는 1인가구 대상으로 외로움과 고립 극복 프로젝트, 혼밥개선 소셜다이닝 프로젝트, 건강지원프로젝트, 안전생활환경 조성 프로젝트 등 총 6개 프로젝트를 운영 중
 - 이 중에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식생활지원 프로그램, 건강돌봄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음
- 국정과제에 따라 신규 사회서비스 확대 시 경기도차원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과 유사한지 점검하고, 유사할 경우 현행 유지, 대상자 확대, 서비스 성격 변화 등을 폭넓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대는 중요한 의의를 가짐. 그러나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유사한 사회서비스를 추진할 경우 사업 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서비스 공급자의 다변화 관련 검토사항

- 국정과제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가 다변화할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관리,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사회서비스 영역은 다양하고, 서비스 영역마다 공급자 특성이 상이함.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공급자들이 추가되어 더 다양해지면 서비스 공급자별로 상이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됨
 - 경기도가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관리자라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서비스 공급자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검토사항

- 국정과제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포함되어 있어 도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현황, 돌봄서비스 인력 근로여건, 보수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경기도는 이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5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현재 아동복지시설 및 여성권익보호시설 등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경기도 상황을 중앙정부에 알리고 경기도에서 실현가능한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현재 경기도와 시군의 상황을 진단하고, 경기도차원의 의견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사회서비스 혁신지원 관련 검토사항

-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점검, 사회서비스 혁신지원역할에 대한 검토 필요함
 -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직접 시설운영, 직접 서비스 제공기능에서 프로그램 개발, 민간기관 및 복지시설 지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런 정책 방향전환 상황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국정과제 45)

■ 주요내용

- 과제목표 :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건강·돌봄 지원
- 주요내용
 - 어르신 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 확충
 - 지역사회 돌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 확대,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 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 시군구 중심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을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 실현
 - 4차산업혁명 기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IoT기반 건강관리사업 등을 확대하여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 확산,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하여 돌봄로봇 등 복지 기술 R&D를 강화, 복지관·요양시설 등을 리빙랩으로 지정 등 돌봄 기술개발 지원
 - 장기요양 : 재택의료센터 확대, 계약의사제 내실화를 통한 의료·요양 복합제공, 통합제가 등 재가서비스 강화, 공립요양시설 확충
 - 요양 - 간병지원 내실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어르신 일자리 확충 관련 검토 사항

- 어르신 일자리 확충 관련해 도 차원에서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시장형 일자리 생산품의 판로 확대, 시군 수행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어르신 일자리 확충은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였고 경기도 역시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등 다양한 수행기관을 운영해옴
 - 현재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22년 현재 93,751명이며, 수행기관은 18개소임
 - 이중 공익활동 75,209명, 사회서비스형 10,348명, 시장형 6,094명, 취업알선형 2,100명으로 수행기관은 18개소 운영 중(경기도, 2022b)
- 그러나 내실 있는 시장형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참여노인의 역량, 참여노인이 생산한 상품의 유통 등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 지역사회 돌봄관련 검토사항

- 경기도는 첫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과정에서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둘째, 기존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추진 시군 지원 셋째, 의료·돌봄을 연계한 커뮤니티케어 실시를 위한 제반여건 마련이 필요함
- 첫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과정에서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지속적 역량강화가 필요함
 - 2019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자 40,025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117명이며, 2022 현재 이용노인은 64,448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경기도, 2022b)
 -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전문인력배치에 의하 맞춤형 사례관리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 국정과제에 제시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 확대, 맞춤형 사례관리강화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이에 도 차원에서는 채용된 인력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대상자 욕구에 맞춘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해 현실성 있는 돌봄필요도 판정도구 개발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2019년부터 실시해온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4개 시군, 자체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실시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도 차원의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함
 - 2019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주거, 돌봄, 의료·보건 등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 제공 모델 설계를 목표로 전국 16개 지자체,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이 선도사업에 참여하였음
 - 또한 양평군이나 시흥시의 경우 같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는 시군도 있음
 - 이에 국정과제에 제시된 의료·돌봄을 연계한 커뮤니티케어와 기존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차이 및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이를 기초로 시군차원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운영과 필요시 이행전략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시군구 지역 단위에서 의료·돌봄을 연계한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해서도 차원에서 의료기관들과의 연계업무가 필요함
 - 현재 돌봄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의료·돌봄을 연계한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력을 견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의료수가 신설 등이 필요하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도의료원과 보건소, 복지기관의 연계업무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 관련 검토사항

- 첫째,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 등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가급여기관에서 통합재가급여 제공을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내 장기요양기관은 6,524개소로 전국 26,916개소의 24.2%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시설급여기관은 2,058개소(전국의 34.1%), 재가급여기관은 4,466개소(전국의 21.4%)가 운영 중¹
 - 통합재가급여는 요양서비스 2개 이상의 묶음 서비스 이용과 방문요양의 다횟수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로서 전국 142개소 제공기관이 있음
 - 통합재가급여는 2019년부터 예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임
 - 통합재가급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역할, 통합재가급여 제공을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이 필요함
- 둘째, 재택의료센터 확대와 관련해 경기도 차원에서는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관련 조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도 의료원의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재택의료센터는 고령층의 의료·돌봄 수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기존 의료·보건기관 내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 관련법의 개정, 적정 수가 설정 등이 필요한 상황임
 - 반면, 경기도에는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 이에 국정과제 수행과정에서 경기도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 점검 필요함
 - 도 의료원은 재택의료센터 확대 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고민이 필요함

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950&bKey=B0019&zoomSize=..>

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국정과제 46)

■ 주요내용

- 과제목표 :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위기,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
- 주요내용
 - 부모급여 신설 :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지급
 -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아동대비 교사비율, 시설면적 개선, 종사자 처우개선,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인근 돌봄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 산모·아동 건강관리체계화 : 생애주기별 통합적 건강관리
 -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가정형보호 확대,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구축

■ 부모급여 도입 시 경기도 검토 사항

- 부모급여 도입 시 지자체별 재정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현재 부모급여는 2022년 개정된 영아수당(월 30만원)을 확대하는 것임. 영아수당은 22년 30만원에서 25년 50만원까지 확대될 계획이었음. 국정과제에 의하면, 영아수당을 0세에 한해 24년부터 1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임
 - 영아수당의 경우 지방비부담이 전체 예산의 20%라는 점에서 부모급여 도입 시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
 - 일부 시군의 경우 재정부담 때문에 시군 자체 사업인 출산수당 등의 사업축소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기존 이용부모 반발이 있을 수 있어 도 차원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아동, 청소년 보호책임 강화와 관련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아동학대 조기발견,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
 - 국정과제 시행과정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구조를 마련하고, 내실화 방안을 검토해야함

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국정과제 47)

■ 주요내용

- 과제목표 :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
- 주요내용
 - 개인예산제 도입 : 개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를 도입
 -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발달재활서비스,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서비스 정교화
 - 소득·고용 : 직무적합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 확충
 - 의료·건강 :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
 - 주거·편의 :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BF 인증제 운영 강화 추진
 - 이동권 : 택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상향 및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저상버스 의무 교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 개인예산제 도입 시 경기도 검토사항

- 첫째, 경기도는 개인예산제 도입에 맞춰 기존 서비스 공급자들과의 상황 공유, 협의, 논의를 해야 함
 - 장애인 권리운동의 확산에 힘입어 최근 주요 선진국(영국, 호주,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음
 - 현금지급제도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복지 혁신이라 할 정도로 대규모 복지체계 변화를 필요로 함
 - 현재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가장 먼저 도입될 수 있는 분야는 단일예산(약1.7조)으로 가장 큰 규모인 활동지원사업임. 현재 활동지원사업은 활동지원 중계기관 및 관련 기관·협회 등이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을 해 왔음
 -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예산지원방식의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자들과의 논의가 필요함

- 둘째, 개인예산제 도입 시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양성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가 원만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개인별지원 계획, 서비스 관리 및 관련 행정 등이 수반됨
 -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소양을 갖춘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함. 그러나 현재 활동지원사업 중개기관의 코디네이터는 관리 및 행정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관련 영향 교육이 필수적임

■ 장애인 콜택시 도입 시 경기도 검토사항

- 첫째, 장애인 콜택시 도입은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콜택시 운영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군의 재정지원금 인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장애인콜택시 도입기준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확대,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 확대 도입 등을 통해 이동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약 10~23%를 지원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재정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장애인콜택시 도입과정에서는 국비가 지원되나, 운영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인력확보 부족으로 인해 쉬는 차가 있는 등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 둘째, 도내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확대하여 이동편의체계를 마련해하도록 시군, 인접 지역과의 논의 필요함
 - 경기도는 지난 해 12월 경기교통공사 내 경기도 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도-시군 간 전산시스템 연계·운영을 위한 공차 운영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도는 31개 시군이 조기에 전산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
 - 시군마다 다른 이용 대상, 요금, 운행 지역 등 운영 기준을 통일화하고 향후 수도권 이동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인접지역인 서울, 인천과도 통합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함

8)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국정과제 90, 91, 92)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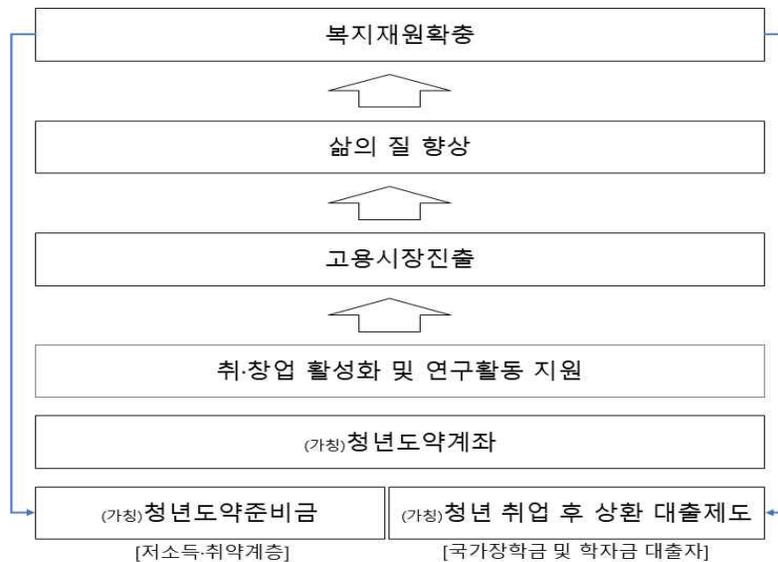
○ 110대 국정 과제 중에서 청년과 관련된 정책은 <약속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아래 국정과제 90, 91, 92에 제시하고 있음

- 국정과제 90 :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 내집마련 :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게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LTV 완화
 - 취업지원 혁신 : 일경험 프로그램,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
 - 청년창업 기반강화, 미래역량강화 지원
 - 교육부담 완화 : 국가장학금 내실화, 취업후 상황 학자금 확대
- 국정과제 91 :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공정기반 구축 : 채용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 자산형성 지원 :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지원해 만기시 목돈마련(가칭 청년도약계좌)
 - 취약청년 출발지원 : 청년도약준비금 신설,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확대
- 국정과제 92 :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확대
 - 청년 참여확대 : 청년인식통로 활성화, 정부위원회 청년위촉 확대
 -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 청년정책 제공, 쌍방향 온, 오프라인 소통
 - 지방 및 민간협업, 청년정책 인프라 확대, 법제도 개선

○ 청년대상 국정과제의 특징으로는 ①경제활동 중심, ②계층별(소득, 학력 등) 선별적(차별적) 지원 등으로 볼 수 있음

- 전체적인 국정비전과 동일하게 청년들도 선별적 지원을 통한 고용시장 진출이 단기적 목표가 되며, 취·창업을 통한 세금납부 등으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생산적 맞춤형 지원으로 볼 수 있음

〈그림 1〉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방향



■ 청년정책 도입 시 경기도 검토사항

- 첫째, 국정과제로 신규 도입되는 청년자산형성사업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과의 관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근로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지원금을 합해 580만원이 적립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을 진행 중임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은 신청불가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가입대상이 중위소득 61%~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의 보충적 성격은 가지는 제도로 볼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자산형성 사업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이런 상황에서 국정과제로 ‘청년도약계좌’이 포함되어 있음.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인 사업설계에 따라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사업 대상자의 변화 또는 전면적인 사업재설계 필요성 검토가 이뤄져야 함

〈표 6〉 중앙정부 및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사업 주요 내용

구분	보건복지부					경기도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노동자 통장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가 구 및 차상위 가구 수급청년 (만 15~39세)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8~34세
본인저축	월 5/10만원	월 10만원	월 5/10/20만원	본인 의무저축 없음	월 10만원	월 10만원
정부지원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평균 36만원, 최대 66.3만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최대 10만원)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7.7만원, 최대 53.8만원)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10만원 저축시 매달 14.2만원 지원
기타지원	민간매칭금 (본인 저축시 월 정액 2만원)	없음	내일키움장려금 (1:1 또는 1:05 매칭) +내일키움수익금	민간매칭금 (본인 저축시 1:1 매칭, 월 최대 2만원)	없음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평균 적립액(10만원 저축 시)	3년 기준 1,728만원	3년 기준 720만원 + 이자	3년 기준 900만원~1,080만원	3년기준 1,789만원 (최대 2,369만원) + 이자	최대 1,440만원 + 이자	2년 기준 약 580만원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출처 : <http://www.hopegrowing.com/summary01.jsp>; https://account.ggwf.or.kr/main/freshman_main.do.

○ 둘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가칭)청년도약준비금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청년층에 대한 국정과제는 근로를 통한, 선별적 지원을 통한 정책수단이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고, 이런 원리가 반영된 것이 ‘(가칭)청년도약준비금’임
- 반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를 대상으로 보편적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만 24세 청년 중에서 취약청년의 경우 기본소득과 청년도약준비금 두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두 사업 모두를 지급할지, 제도적용의 우선순위를 둘지 검토가 필요함

▣ 나가며

■ 도 차원 검토 과제

- 첫째, 국정과제에 사회보장 조정기능 강화, 시군 재정 부담이 큰 사업들(보육 등)이 제시되어 있음. 해당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시군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함
- 둘째, 국정과제에 제시된 사업 중 일부는 경기도 자체사업과 유사하여 국정과제 실행과정에서 경기도사업과 중앙사업과의 관계설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에 긴급지원사업 확대, 청년과 1인가구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사회서비스원 기능, 청년자산형성과 관련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음. 해당 국정과제의 경우 경기도에서 이미 유사사업을 실시 중에 있음
 - 이에 국정과제 실행과정에서 경기도는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 사업조정 필요성, 중앙정부와 경기도 자체사업 간의 관계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셋째, 국정과제에 포함된 복지서비스 공급기관 다변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도는 서비스 공급기관 관리,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국정과제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다변화, 사회서비스 혁신 TF, 종사자 처우개선 등 복지서비스 공급구조 변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음
 - 국정과제 실행과정에서 경기도는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 관리,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또한 서비스 공급구조 변화와 관련해 경기도내 서비스 공급자와 정책논의, 협의 등을 고려해야함
- 넷째,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확대, 중앙정부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및 급여인상, 각종서비스 체계 변화는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연결되어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중앙정부 차원의 주요정책

- 본 보고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할 쟁점들이 있는 국정과제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아 중앙정부차원의 중요한 정책변화 중 검토하지 않은 안건들이 있음
 - <국정과제 42>에 제시되어 있는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인상, 연기금 활용, 연금보험자 변화 등 다양한 변화들이 포함된 주제임. 국민연금 개혁의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이 크진 않지만 노인빈곤문제가 여전히 한국사회에 중요한 화두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국정과제 43>에 제시되어 있는 상병수당 도입의 경우 현재 보건복지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상병수당 도입은 사회적 위험분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제도임. 상병수당 도입 역시 중요한 복지분야의 정책변화로 볼 수 있음
 - <국정과제 46>에 포함되어 있는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한다는 것인데, 관련된 내용 검토, 제도 개선 등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시 보육료, 육아학비 통합, 이용부모 부담 조정, 교사 자격일원화 등 검토해야할 사항들이 다수 있음
 - <국정과제 48>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이주민 인권 보호, 동물복지와 관련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음. 각 대상별 제시된 과제들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앞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음
 - <국정과제 52>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도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연계서비스 제공 등이 과제로 제시됨.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과의 관계 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위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제지만 중요한 복지정책의 변화라는 점에서 경기도, 사회복지 현장,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문헌

경기도(2022a). 『2022년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업무안내』.

경기도(2022b). 『노인복지사업안내』.

경기도 내부자료(2022a). 『2022년 경기도 생계급여 국도비 보조 가내시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2022b). 『“따로 또 같이, 더불어 사는 나우리(나+우리) 공동체 구현”』.

경기복지재단(2021). 『경기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관계부처합동(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5.).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https://account.ggwf.or.kr/main/freshman_main.do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통계자료실 장기요양기관 현황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950&bKey=B0019&zoomSize=.](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950&bKey=B0019&zoomSize=)

사회보장위원회 신설변경 협의제도 시도별 통계

<https://www.ssc.go.kr/menu/after/after080206.do>

희망내일키움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

<http://www.hopegrowing.com/summary01.jsp>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FOCUS 2022-0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복지정책 주요내용 및 경기도 과제

발행일 2022년 5월

발행인 문정희 대표이사 직무대리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